

	윤리강령	제(개)정일자	2023.06.22
		개 정 번 호	Rev.0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고객은 회사 존립의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모든 경영활동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며,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확보한다.

1. 고객존중

진실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을 경영활동의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고객의 발전이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3. 고객에 대한 가치의 제공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4. 고객의 이익 보호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

	윤리강령	제(개)정일자	2023.06.22
		개 정 번 호	Rev.0

제2장 투자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회사는 효율적인 경영활동 및 업무처리를 통한 건전한 이익 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보호와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1. 투자자 권리 보장

회사는 법률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기업정보를 동등하게 제공한다.

2. 회계의 적법성

회사는 공정하고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를 기록 관리하여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한다.

3. 경비 지출의 투명성

회사는 제반 경비를 규정된 용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당한 현금조성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내부 시스템

위험관리체제와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와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윤리강령	제(개)정일자	2023.06.22
		개 정 번 호	Rev.0

제3장 공정한 경쟁 및 거래

세계화 시대의 자유경쟁 원칙 및 공정거래 원칙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제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1. 자유경쟁의 추구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2. 법규의 준수

전 세계의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은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3. 협력사와의 공존공영

협력사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여 협력관계를 상호발전의 계기로 삼는다.

1) 평등한 참여기회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사에게 거래선 등록 및 선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2) 공정한 거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

3) 상호발전의 추구

기술 및 경영협력 등을 통해 거래선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윤리강령	제(개)정일자	2023.06.22
		개 정 번 호	Rev.0

제4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회사는 합리적 사업영위를 통한 건실한 성장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1. 국가에 대한 책임

관련 산업의 주역으로서 고용을 창출하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실한 조세 납부자로서 역할을 다한다.

2. 사회발전에 기여

- 1)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 경제 및 문화발전에 기여한다.
- 2) 임직원들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3) 사회 각계 각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정치활동 관여 금지

- 1)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 정당, 정치위원회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 2)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하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윤리강령	제(개)정일자	2023.06.22
		개 정 번 호	Rev.0

제5장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책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공평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금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

1. 인재 육성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연령 출신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또한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2.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회사는 성별,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세워서 평가함으로써 임직원의 자기개발 의욕을 북돋으며 아울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임직원 존중

회사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4. 창의성 촉진

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창의성이 촉진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최대한 조성한다.

5. 단결권, 단체행동권 보장

회사는 노동조합 설립, 노동조합 가입여부, 적법절차에 따른 단체행동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이익 취급을 하지 않는다.

	윤리강령	제(개)정일자	2023.06.22
		개 정 번 호	Rev.0

제6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건전한 관행과 조직문화를 형성 하기 위해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임직원의 기본윤리

- 1)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 2)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 3) 회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1) 제반 법률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 (2)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한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위를 삼가한다.

2. 공정한 직무의 수행

- 1) 제반 법률 및 회사의 규정을 숙지하여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최선을다해 직무를 수행한다.
- 2) 회사의 정책 및 방침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의 책임을 진다.
- 3) 관련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 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인다.
- 4) 직무수행 도중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제공 및 요구하지 않는다
- 5) 회사 내 사용이 불가능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3. 자기 계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자기계발에 끊임없이 노력한다.

4. 이익의 상충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임직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체의 거래행위를 피해야 하며, 그러한 상충이 발생할 경우 윤리적인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윤리강령	제(개)정일자	2023.06.22
		개 정 번 호	Rev.0

5. 임직원 상호간의 윤리

직장 내 인간관계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결속되어야 한다.

- 1) 기본예의를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편안한 직장이 되도록 서로 노력한다.
- 2)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금한다.
- 3) 제반 법률 및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임직원 상호간에 도와주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 4) 임직원 상호간 부당한 청탁 및 금전거래 행위와 개인적인 금품 수수행위를 금한다.
단, 임직원들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생일, 전배, 경조사 등)내에서 가벼운 선물 수수는 예외로 한다.
- 5) 상사의 업무상 지시는 최선을 대해 이행토록 노력한다. 그러나 그 지시내용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위법인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이후에도 이런 지시행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내부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 6)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다.
- 7)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통한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 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다.
- 8)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한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장애인 차별로 인식 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회사재산의 보호 및 보안 유지

1) 회사 재산의 개인적 이용금지

- (1) 임직원은 업무시간에 업무상 목적 이외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 (2) 임직원은 회사재산을 업무상 목적 이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비공개정보의 이용

회사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회사, 고객 또는 협력업체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 하여 주식거래를 포함하는 일체의 재산상의 권리를 매매하지 않는다.

3) 보안유지

- (1)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회사의 영업/재무/인사 또는 기술에 관한 정보, 계획자료 등(회사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타회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포함)은 비밀로 유지 관리하며, 회사의 명문화된 방침과 절차에 의한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지 않는다.
- (2) 퇴사할 때도 상기 자료 등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퇴사 이후에도 영구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윤리강령	제(개)정일자	2023.06.22
		개 정 번 호	Rev.0

7. 안전 및 위험 예방

- 1)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직무 수행 시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2) 재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조치와 함께 전력을 다해 수습해야 한다.
- 3)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작업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 한다.

	윤리강령	제(개)정일자	2023.06.22
		개 정 번 호	Rev.0

제7장 윤리규정의 적용

1. 적용 대상 및 준수의무

- 1) 본 윤리규정은 회사(경영권이 있는 국내·외 투자회사 포함) 및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윤리규정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 한다.
- 2) 구성원의 본 윤리규정의 준수 및 이에 대한 준수서약 의무가 있고, 그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면 인사부서 책임자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 3) 구성원은 본 윤리규정의 위반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4) 각 부서장은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 5) 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2. 윤리상담 신고 및 제보자 보호

- 1) 회사는 윤리경영 관련 상담 신고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확인 및 조사를 시행한다.
- 2) 회사는 상담 신고자 보호 및 상담신고 장려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상담 신고자의 신분 및 상담 신고내용을 보호하며 상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상담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사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영지원팀 책임자는 대표이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련자 협의를 통해 부서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구성원은 상담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담 신고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그 사실을 상담 신고한 경우 회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시 정상을 참작한다.

상담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상담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윤리강령	제(개)정일자	2023.06.22
		개 정 번 호	Rev.0

제8장 내부고발 및 고발자 보호

1. 목적

비윤리적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 당사자가 마음놓고 인사부서에 동 내용을 신고, 제보, 고발 하도록 하여 저촉.위반사항에 대한 거부 권리를 보장하고 내부고발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한다.

2. 고발의무

회사의 전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 하면서 비윤리적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경영지원팀 등에 신고, 제보, 고발하여야 한다.

3. 보호주체

회사와 인사부서는 모든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내부고발접수대장에 기록관리를 명확히 할 의무가 있다.

단, 내부고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내부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4. 입증책임 및 면책

1) 내부고발자는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2) 부정한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동에 저촉. 위반되는 활동에 가담하였으나 이를 고발한 경우에는 고발자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 할 수 있다.

3) 회사의 전 임직원은 소속된 부서의 상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윤리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강요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전임직원은 상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더라도 직위의 이동, 승급, 승진 등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임직원은 경영지원팀에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윤리강령	제(개)정일자	2023.06.22
		개 정 번 호	Rev.0

5. 제보(고발)방법 및 제보(고발)처

- 1) 방법 : 상담, 전화, 이메일, 서면 고발, 카카오톡 등을 택할 수 있으며, 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무기명 고발은 자칫 모략이나, 음해, 장난의 소지가 있고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 2) 고발처 :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제보 및 고발은 경영지원팀 또는 경영지원팀 책임자, 대표이사에게 직접할 수 있다.

6. 비밀보장의무

누구든지 내부고발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7. 제재

비윤리적 행위로 고발된 임직원에게 대해 공정한 조사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타 복무규율위반 행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 조치한다.

8. 포상

회사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신고, 제보, 고발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및 윤리경영 진작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 제보자, 고발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

9. 조사결과와 통보

경영지원팀은 피고발자, 고발자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근거해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 부 칙 >

1. 시행일

본 윤리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